

의안번호	제 324 호
의 결 연 월 일	2019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 
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충청북도교육감
발의연월일	2019년 11월 22일

#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2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 2019. 11. 22.

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## 1. 제안이유

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학교서열 해소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충주시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충주시를 추가함(안 제2조)
- 나. 충청북도교육감의 충주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는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함(안 부칙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별첨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타
  - 1) 신구조문 대비표: 별첨
  - 2)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사항 없음
  - 3) 규제심사 : 규제 심사대상이 아님
  - 4) 입법예고(2019. 10. 19. ~ 11. 7.): 특기할 사항 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청주시(읍·면 지역은 제외한다)” 를 “청주시(읍·면 지역은 제외한다), 충주시(읍·면 지역은 제외한다)” 로 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2조의 “충주시(읍·면지역은 제외한다)” 는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2조(충청북도교육감이  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)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7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<u>청주시(읍·면 지역은 제외한다)</u>로 한다.</p>	<p>제2조(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청주시(읍·면 지역은 제외한다), 충주시(읍·면 지역은 제외한다)---</u>.</p>

## 관계법령

### □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
[시행 2019. 9. 24.] [대통령령 제30088호, 2019. 9. 24, 일부개정]

제77조(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) 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.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후기학교(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)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.

1. 학교 간 거리,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

2.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

3.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

가. 학교군 설정

나. 학생배정방법

다.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

라.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

마.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·특성화 계획

4.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·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. 이 경우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시·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·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제3호·제4호 및 제3항의 타당성 조사, 여론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·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